

學校環境淨化事業의 法的根拠 및 推進現況

〈文敎部 體育局 學校體育課 提供〉

1. 沿革

- ① 1967. 3. 30→學校保健法 制定 公布
- ② 1969. 12. 25→同法 施行令 制定 公布
- ③ 1970. 9. 14→同法 施行規則 制定 公布
- ④ 1972. 8. 25→同法 施行規則 第2條 但書 承認權을 各 市道敎育委員會 敎育監에게 委任

2. 目的

騒音, 振動, 惡臭 등의 發生으로 學生의 學習에 支障이 있는 行爲와 學校 保健 衛生에 影響을 끼치는 非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를 除去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 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 敎育의 能率化를 期함에 있다.

3. 根 據

- ① 學校保健法→第5條, 第6條
- ② 同法施行令→第3條, 第4條, 第5條
- ③ 同法施行規則

4. 淨化區域 對象 學校

敎育法 第81條에 規定한 各級 學校

- ①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
- ② 敎育大學, 師範大學
- ③ 實業高等專門學校, 專門學校
- ④ 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
- ⑤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 ⑥ 特殊學校
- ⑦ 幼稚園
- ⑧ 各種 學校

5. 淨化區域

① 淨化區域의 設定權者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道敎育委員會의 敎育監

② 淨化區域의 範圍

學校 담장(울타리)으로부터

ㄱ)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市地區 : 300m

ㄴ) 其他地域 : —200m

③ 協議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道敎育委員會에서 淨化區域을 設定할 때에는 事前에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및 道知事와의 協議를 하여야 한다.

④ 公告

ㄱ) 各 市道 敎育委員會에서 淨化區域을 設定할 때에는 設定日字와 設定地域을 公告하여야 하며 同時에

ㄴ) 各級 學校의 長은

㉞ 淨化區域의 範圍를 表示한 地積圖와

㉟ 淨化區域 內의 全 地番을 記載한 目錄을 作成하여

㊱ 地積圖와 地番目錄을 揭示板에 公告함과 同時에 庶務室에 備置하여 民願이 있을 경우 常時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淨化區域 內에서의 禁止行爲 및 施設의 範圍 淨化區域 內에서의 學習에 支障이 되는 行爲

의 學校 保健 衛生에 影響을 끼치는 非 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의 範圍는

ㄱ) 公害防止法 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公害 安全 基準을 超過하여 公害를 發生케 하는 行爲 또는 施設

ㄴ) 食品 衛生法 施行令 第9條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營業 場所에서 酒類를 取扱하는 行爲와 同條 第4號 내지 第7號에 規定된 營業 및 宿泊業法의 規定에 依한 호텔, 여관, 여인숙 營業

ㄷ) 劇場, 屠殺場, 火葬場, 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그 貯藏所 壓縮게스의 製造場 및 그 貯藏所

ㄹ) 汚物 清掃法 施行令 第2條의 規定에 依한 汚物 蒐集 場所, 汚物 埋立場, 汚物 塵芥 燒却場, 糞尿終末處理場

ㄹ) 公衆沐浴湯中 休憩室 및 터키湯

ㄹ) 廢水 處理場 및 化製場

ㄹ) 傳染病 隔離病舍 또는 隔離所, 傳染病 療養所

ㅇ) 路店, 行商 및 이와 類似한 施設 또는 行爲로서 學習 또는 學校 保健 衛生에 나쁜 影響을 끼친다고 認定되는 施設 및 行爲

⑥ 淨化區域 內에서의 淨化 要請 및 措置

ㄱ)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및 道知事は 學校의 學習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는 行爲와 學校 保健에 影響을 끼치는 非 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를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그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ㄴ)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道教育委員會는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道知事에게 淨化區域 內의 禁止行爲 및 施設에 對하여 淨化의 措置를 要請하여야 하며,

ㄷ) 이의 要請을 받은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道知事は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6個月 以內에 이를 處理하고 이를 當該 教育委員會 教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6. 學校環境淨化委員會

① 構成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道 教育委員會 教育監은 當該 自治團體의 學校環境淨化委員會를 構成하여야 하며 그 構成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② 役割

學校環境淨化區域 內에서의 禁止行爲 및 施設이 學校 學習 및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끼치는지의 眞否를 審議한다.

③ 審議 結果 處理

ㄱ) 淨化措置要求

學校淨化委員會의 審議結果 淨化區域 內에서의 禁止行爲 및 施設이 學校 學習 및 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끼친다고 認定되었을 때에는 教育監은 當該 自治團體의 長에게 淨化의 措置 要求를 하여야 한다.

ㄴ) 解除承認

學校環境淨化委員會 審議結果 淨化區域 內에서의 禁止行爲 및 施設이 學校 學習 및 學校 保健 衛生에 나쁜 影響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認定되는 施設 및 行爲에 對하여 各 市道 教育監은 民願人에게 그 施設 및 行爲에 限하여 解除 承認할 수 있다.

ㄷ) 意見書 發給

“酒稅法 施行令 第15條의 2에 “食品衛生法에 依하여 營業許可를 받은 者와 酒類를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酒類 販賣業의 申告를 하고자 할 境遇 그 營業許可를 받은 場所가 學校 保健法에 依한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內에 있을 때에는 學校環境淨化委員會의 意見書를 添附토록 規定되어 있으므로 民願人이 同意書發給 依賴가 있을 때에는 當該 教育監은 學校環境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意見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7. 學校環境衛生淨化推進 現況(各 市道別)

(76. 7. 1)

시도별	학교별	학교수	정화구역 설정학교 현황			미 설 정학교수	정화사업 추진 현황					비 고
			피해전 무학교	피해대 상학교	계		정 화 대 상중견수	75 년 도 조치건수	조치건수	미 조 치 수		
서울	초	259	239	20	259	0	252	0	168	84		
	중	180	168	12	180	0	138	0	72	66		
	고	149	129	20	149	0	151		104	47		
	대	57	4	53	57	0	170	108	108	62		
	유치원	209				209						
	기 타	75				75						
계	929	540	105	645	284	711	108	452	259			
부산	초	113	97	6	103	10	33		33			
	중	76	65	8	73	3	19		19			
	고	66	57	4	61	5	9	3	9			
	대	16				16						
	유치원	61				61						
	기 타	37	16		16	21						
계	369	235	18	253	116	61	3	61				
경기	초	712	684	28	712	0	41		0	41		
	중	230	225	5	230	0	5			5		
	고	162	162		162	0	8		0	8		
	대	20				20						
	유치원	76				76						
	기 타	70				70						
계	1,270	1,071	33	1,104	166	54	—	—	54			
강원	초	785 (151)	711 (147)	58	769 (147)	16 (4)	821	113	443	378		
	중	145	117	14	131	14	137	21	51	86		
	고	83	69	8	77	6	84	20	20	64		
	대	11	1	2	3	8	7	1	1	6		
	유치원	36	0	0	0	36	0	0	0	0		
	기 타	29	1	0	1	28	0	0	0	0		
계	1,088 (151)	899 (147)	82	981 (147)	108	1,049	155	515	534			
충북	초	431 (41)	389	45 (1)	434 (41)		770	59	701	69		
	중	101	86	15	101		244	22	217	21		
	고	53	46	6	32	1	70	4	62	8		
	대	6	3	3	6		5			5		
	유치원	15	9	5	14	1	10			10		
	기 타	9	6	1	7	2	1			1		
계	618	539	75 (1)	614 (41)	4	1,100	85	98	120			
충남	초	698 (44)	682 (44)	16	698 (44)		19		15	4		
	중	198	188	9	197	2	10		7	3		

충 남	고	107	89	2	101	6	2		2	0
	대	14	2	0	2	12				
	유치원	39				39				
	기 타	42			1	41				
	계	1,099 (44)	972	27	999 (44)	100	31		24	7
전 북	초	644 (51)	601 (48)	32	633 (48)	11 (5)	1,493	61	1,493	
	중	173 (2)	159	8	167	6 (2)	465	28	465	
	고	94	70	9	79	15	77	3	77	
	대	14	5	2	7	7	17	5	17	
	유치원	19	1		1	18	5	5	5	
	기 타	29	5		5	24	2	2	2	
계	973 (53)	841 (48)	51	892 (48)	81 (5)	2,059	104	2,059		
전 남	초	1,204 (210)	761 (208)	436	1,197 (208)	7 (2)	294	21	173	121
	중	275	131	144	275		36	6	16	20
	고	128	33	82	195	3	259	1	68	191
	대	18				18				
	유치원	40				40				
	기 타	45				45				
계	1,710 (210)	925 (208)	672	1,597 (208)	113 (2)	589	28	237	332	
경 북	초	1,158	1,073	85	1,158	0	85	1	85	
	중	321	302	19	321	0	19	1	19	
	고	181	166	15	181	0	17	2	17	
	대	22	16		16	6				
	유치원	83	51		51	32				
	기 타	64	43		43	21				
계	1,829	1,651	119	1,770	59	121	4	121		
경 남	초	999 (68)	961 (64)	19	980 (64)	12 (4)	113		54	59
	중	249 (2)	226 (2)	8	234 (2)	15	37		17	20
	고	131	107		107	24	8		8	
	대	13	2		2	11				
	유치원	52				52				
	기 타	29				29				
계	11,466 (70)	1,296 (66)	27	1,323 (66)	143 (4)	158		79	79	
제 주	초	131 (18)	125 (14)		125 (14)		63	63	63	
	중	35	24	1	35		5	4	4	1
	고	23	22		22	1	13	13	13	
	대	4				4				
	유치원	9				9				
	기 타	2				2				
계	204 (18)	181	1	182	22 (4)	81	80	80	1	